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69
----------	------

2017년 4월 27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 12. 8. 최영수 의원(찬성자 11명)
나. 회부일자 : 2016. 12. 9.
다. 상정일자 :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7. 3. 2.) 상정
-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7. 4. 27.)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영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연구용역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 과제 제안자를 의원으로 하되 의회 사무처도 의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용역 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연구용역의 관리주체를 규정함(안 제7조)
- 연구용역평가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연구용역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제안되었음.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시행하는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의 기본계획수립을 의장이 하도록 제안하고, 의원이 제안한 연구용역 과제의 공모부터 선정, 발주, 품질관리, 완수까지의 전반적인 운영을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하도록 관리주체 등을 변경하고 의회사무처가 제안한 연구용역 과제의 경우 입법담당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의 주요내용 >

구분	현행	전부개정안	
계획수립	입법담당관	의장	
제안자	의원	의원	의회사무처
과제선정	연구용역심의위원회	해당 상임위(수석) 전문위원	입법담당관
과제공모, 선정, 발주, 완수 등 전반적 행정사항	입법담당관		
과제품질관리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해당 상임위(수석)전문위원		

2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 제4조는 입법담당관이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매년 시행성과 평가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음.

- 이는 의정활동 수요에 맞춘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환류·반영함으로써 관련업무 수행의 연계 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음.
-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의견수렴 규정이나 기한규정을 흠결하고 있어, 연간 연구용역 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이에 대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3 연구용역 과제 제안(안 제5조)

- 현재 연구용역 과제 제안자는 의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하고 있음(제6조).
- 개정안은 연구용역 과제의 제안자를 현재 ‘의원’에서 ‘의회사무처’까지로 확대하고,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의 소관업무에 한정해 연구용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5조).
-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선정현황을 살펴보면, 의원의 연구용역 과제 접수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에, 한정된 예산사정으로 평균 20건의 과제가 선정되고 있음
 - 특히, 2016년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채 외부공모를 통해 연구용역 제안을 받았으며, 70건의 접수과제 중 의회사무처 제안 및 외부공모 6건을 포함해 모두 20건의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한바 있음.

<최근 3년간 의원입법지원 연구용역 선정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4	2015	2016			
계 획	예산	791,200	698,300	742,000			
	건수	14건	10여건 내외	10여건 내외			
실 적	집행	782,893	694,493	724,810			
	건수	20건	22건	20건			
과제제안자		의원	의원	계	의원	의회 사무처	외부
접수 건수		28건	54건	70건	51	2	17
선정 건수		20건	22건	20건*	18	2	4

* 2016년 연구용역 과제중 사무처제안과제는 의원과제와 외부공모과제와 각 1건씩 통합되었고, 외부 공모과제 4건 중 3건은 의원과제와 사무처과제로 통합되었음, 외부공모 1건은 단독 선정되었음.

- 한정된 예산 사정상 의원들의 연구용역 수요증가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구용역 과제 제안자를 의원에서 의회사무처까지 확대하고, 의원의 과제제안 범위를 소속 상임위 소관업무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다만, 개정안과 같이 제안자를 의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의회사무처로 확대하게 될 경우 연구과제의 다양성과 중장기 의회과제에 대한 연구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일반시민 및 학계, 시민단체 등 범주를 넓혀 제안자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은 과제제안을 의원의 경우 소속 상임위 소관 업무로만 한정하고 있어 소속 상임위 관련 과제 이외에 의원의 판단으로 다른 상임위분야의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함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운용상의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임.

4 연구용역 관리(안 제7조)

- 현행 조례는 의원이 제안한 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이 선정된 이후 해당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이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 보고 등 연구용역의 품질을 중점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음(제16조제2항).
- 종전에는 연구용역의 업무 전반을 입법담당관이 담당하여 왔으나, 조례 제정(2015. 5. 4)을 통해 입법담당관이 본연의 기능인 의원 입법활동 지원에 집중토록하기 위한 취지에서 연구용역의 착수·중간·최종보고 업무를 해당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으로 이관하였음.
- 개정안은 의원이 제안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착수, 중간, 최종보고의 질 관리뿐만 아니라 연구용역의 공모에서부터 과제선정, 용역발주, 완수까지의 연구용역 전반의 행정업무를 입법담당관이 아닌 각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이 하도록 연구용역 관리주체를 변경하고 있으며, 의회 사무처가 제안한 과제에 대해서는 입법담당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이처럼 연구용역 제안자에 따라 관리주체를 (수석)전문위원과 입법담당관으로 이원화하여 연구용역사업 전반을 책임 운영토록 하는 것은 연구용역 업무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 따라서 연구용역의 관리는 총괄부서와 주관부서로 구분하여 관리업무 총괄 및 실제 연구용역 수행을 주관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로 판단됨.

- 또한, 개정안 중 연구용역과제의 선정을 상임위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상임위의 소관업무와 밀접하고 시의적절한 연구용역과제가 선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임위원회에 따라 연구가 필요한 과제의 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5

연구용역심의위원회 폐지(현행 조례 제9조 ~ 제12조) 및 연구용역평가위원회 신설(안8조~안11조)

- 현행 조례는 연구용역의 과제선정 및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 등 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심의와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정책연구위원회 내에 ‘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기능의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역할을 (수석)전문위원과 입법담당관에 각각 분리하는 한편, 연구용역결과물의 ‘우수성’과 ‘충실성’에 대한 사후평가만을 수행하는 ‘연구용역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있음.
- 그러나 연구용역 전반을 심의하는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기구를 폐지하는 명분이 미약하고 연구용역평가위원회 또한 그 구체적 권한과 책임이 모호하여 연구용역 평가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내실화를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

6

연구기관의 공모(현행 조례 제14조)

- 현행 조례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을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공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4조).
- 이는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입법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으로, 개정안은 연구용역 수행기관 공모방식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있음.
- 연구용역 관리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연구용역 연구기관의 공모 방식 규정은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7

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 삭제(현행 조례 제15조)

- 현행 조례는 유효한 공모에 한하여 연구용역과제별 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를 두고, 구체적 평가항목 및 평가위원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제15조).

- 그러나 개정안은 이 위원회를 삭제하고 상임위 (수석)전문위원과 입법담당관이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을 선정토록 하고 있음.
- 이럴 경우 현행 조례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항목¹⁾이 아닌 발주부서에 따라 각기 다른 연구기관 선정기준을 마련하게 될 우려가 있고, 연구기관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입법취지에 따라 연구기관의 선정에 있어서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8 상임위원회 의견 조희 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8조에 따라 연구용역 사업은 입법담당관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므로 관리주체를 입법담당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입법담당관의 고유업무를 상임위로 분산·이관시키는 것은 입법담당관 존립 필요성의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임.
- 특히 의회사무처 특정 예산사업을 위원회가 수행할 경우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으로 전락하는 모순이 발생하며, 소속의원이 제안한 과제를 상임위 소속 전문위원실에서 관리할 경우 공모와 용역수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 담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밖에 의원이 소속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하여만 연구용역을 제안하도록 하는 것은, 의원들의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현안사항에 대한 과제 제안을 차단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의회사무처 제안 연구용역은 소관 상임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를 예정한 것이나, 모든 연구용역 제안과제는 상임위를 특정할 수 있어 의회사무처 제안 연구용역을 새로운 유형으로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음.

1) 제15조(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 ① 제14조에 따른 유효한 공모에 한정하여 연구용역과제별 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 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연구기관을 선정한다.

1. 참여연구진의 역량 및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
2. 과업지시서와 연구계획서의 부합성
3.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
4.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5. 연구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6. 연구 결과의 활용가능성
7. 그 밖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종합 의견

- 이상을 종합하면, 연구용역의 실효성 확보와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연구용역 관리의 일관성 및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수정이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 론 요 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총괄부서를 정하고,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이 수립하며, 의원의 연구용역 과제 제안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용역 과제제안자별 과제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를 현행대로 존치함으로써 연구용역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연구용역의 총괄부서를 입법담당관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3호)
- 의장의 연구용역 관련 책무를 현행과 같이 규정함(안 제3조).
-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은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2월말까지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 전에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토록 함(안 제4조).
- 연구용역 과제제안자별 과제 선정방법과 선정된 연구용역의 착수, 중간, 최종 보고 등 관리주체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11조).
- 연구기관의 공모방식을 규정하고 객관적인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를 현행대로 존치함(안 제9조 및 안 제10조).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0명 전원 찬성).

9.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569
----------	------------

제안년월일 : 2017년 4월 27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총괄부서를 정하고,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이 수립하며, 의원의 연구용역 과제 제안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용역 과제 제안자별 과제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를 현행대로 존치함으로써 연구용역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연구용역의 총괄부서를 입법담당관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3호)
- 의장의 연구용역 관련 책무를 현행과 같이 규정함(안 제3조).
-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은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2월말까지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 전에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토록 함(안 제4조).
- 연구용역 과제제안자별 과제 선정방법과 선정된 연구용역의 착수, 중간, 최종 보고 등 관리주체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11조).
- 연구기관의 공모방식을 규정하고 객관적인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를 현행대로 존치함(안 제9조 및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로 하고, 안 제2조제1호 중 “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리”란 연구용역 과제공모에서부터 연구용역의 완수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입법담당관을 말한다.

안 제3조부터 안 제17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들의 입법연구와 정책개발 등의 의정활동이 자유롭고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보장해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의장은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입법 및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4조(연구용역 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 연구용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위원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즉시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위원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해당연도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예산지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의원은 연구용역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의회사무처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할 수 없는 의회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연구용역 과제선정기준) 연구용역의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제8조(연구용역 과제선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과제는 소관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상임위원회위원장이 선정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안된 과제는 의회사무처장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선정한다.

제9조(연구기관의 공모) 총괄부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을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공모한다. 다만, 2회 연속 유찰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 ① 제9조에 따른 유효한 공모에 한정하여 연구용역과제별 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연구기관을 선정한다.

1. 참여연구진의 역량 및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
2. 과업지시서와 연구계획서의 부합성
3.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
4.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5. 연구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6. 연구 결과의 활용가능성

7. 그 밖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평가위원회 위원은 연구용역 과제 관련 공무원,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한다.

제11조(연구용역의 관리) ① 총괄부서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관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관리는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2조(연구용역평가) ① 위원장은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에 대한 평가를 한다.

② 연구용역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결과의 공개) 위원장은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 및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외부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의회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6조(표창) 의장은 연구활동 성과가 우수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서울특

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안 [별지 서식]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시행하는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의회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입법정책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신설>	1. “입법정책 연구용역”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1. ----- ----- ---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 -----.
<신설>	2. “관리”란 연구용역 과제공모에서부터 연구용역의 완수까지 연	2.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p><u>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u></p>	<p>3 “총괄부서”란 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입법담당관을 말한다.</p>
<p>제3조(책무) ① <u>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u></p> <p>② <u>의장은 의원들의 입법연구와 정책개발 등의 의정활동이 자유롭고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보장해야 한다.</u></p> <p>③ <u>의장은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u></p>	<p><삭제></p>	<p>제3조(책무) ① <u>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의장은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입법 및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u></p>
<p>제4조(연구용역 추진계획) ① <u>의회 사무처 입법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 연구용역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u></p> <p>② <u>담당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한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u></p> <p>③ <u>담당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u></p>	<p>제3조(기본계획) ① <u>의장은 매년 해당연도의 의회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u></p> <p>② <u>의장은 해당연도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p> <p><삭제></p>	<p>제4조(연구용역 기본계획) ① <u>「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 연구용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u></p> <p>② <u>위원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즉시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u></p> <p>③ <u>위원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u></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u>이를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u></p> <p><u>④ 담당관은 해당연도 추진계획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u></p>	<p><삭 제></p>	<p><u>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u></p> <p><u>④ 위원장은 해당연도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u></p>
<p><신 설></p>	<p><u>제4조(예산지원)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u></p>	<p><u>제5조(예산지원) ----- 범위에서 -----</u></p>
<p><u>제6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u></p> <p><u>② 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용역 과제가 의회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용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u></p> <p><u>③ 담당관은 제1항의 제출서류 및 제2항의 확인 결과를 제9조에 따른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u></p>	<p><u>제5조(과제 제안) ①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u></p> <p><u>② 의회 사무처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할 수 없는 의회 현안 사항 등에 대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용역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u></p> <p><u>③ <삭 제></u></p>	<p><u>제6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의원은 연구용역을 제안할 수 있으며, ----- 연구용역 -----</u></p> <p><u>② 의회사무처-----</u></p> <p><u>-----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u></p> <p><u>③ (개정안과 같음)</u></p>
<p><u>제7조(연구용역의 선정기준) 연구용역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연구용역 목적의 명확성 4.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p><u>제6조(연구용역 과제선정기준)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삭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p><u>제7조(연구용역 과제선정기준) (개정안과 같음)</u></p>
	<p><신 설></p>	<p><u>제8조(연구용역 과제선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과제는 소관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상임위원회위원장이 선정한다.</u></p> <p><u>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안된 과제는</u></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u>의회사무처장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선정한다.</u></p>
<p><u>제14조(연구기관의 공모) 담당관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을 일반경쟁 입찰방식에 의하여 공모한다. 다만, 2회 연속 유찰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u></p>	<p><삭 제></p>	<p><u>제9조(연구기관의 공모) 총괄부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을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공모한다. 다만, 2회 연속 유찰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u></p>
<p><u>제15조(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u></p> <p>① <u>제14조에 따른 유효한 공모에 한정하여 연구용역과제별 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 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u></p> <p>② <u>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연구기관을 선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참여연구진의 역량 및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u> 2. <u>과업지시서와 연구계획서의 부합성</u> 3. <u>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u> 4. <u>연구비 산정의 적정성</u> 5. <u>연구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u> 6. <u>연구 결과의 활용가능성</u> 7. <u>그 밖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③ <u>평가위원회 위원은 연구용역과제 관련 공무원, 상임위원회(수석)전문위원,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한다.</u></p> <p>④ <u>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전</u></p>	<p><삭 제></p>	<p><u>제10조(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 ① 제9조에 따른 유효한 공모에 한정하여 연구용역과제별 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문가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한다.</p>		
<p>제16조(연구용역의 관리 및 평가) <u>① 담당관은 의회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u> 1.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p> <p><u>②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을 관리하고, 연구용역이 준공된 이후 2주 이내에 연구용역 결과물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u></p> <p><u>③ 심의위원회는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담당관은 그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u></p>	<p>제7조(연구용역의 관리)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제안한 연구용역 과제는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관리한다. 1. ~ 3. <삭 제></p> <p>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의회 사무처가 제안한 연구용역 과제는 입법담당관이 관리한다.</p> <p>③ <삭 제></p>	<p>제11조(연구용역의 관리) ① 총괄 부서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p> <p>②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관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관리는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에서 수행한다</p> <p>③ (개정안과 같음)</p>
<p><신설></p>	<p>제8조(연구용역평가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하여 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내에 연구용역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중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되, 6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제12조(연구용역평가) ① 위원장은 ----- 평가를 한다.</p> <p>② 연구용역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p> <p><삭 제></p>

현 행	개정안	수정안
	④ 평가위원회의 간사는 입법담당관이 된다.	<삭 제>
<신 설>	제9조(회의) ① 평가위원회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신 설>	제10조(제척·회피) ① 평가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연구·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경우 2. 평가대상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평가대상과 관련된 연구소 또는 단체에 재직할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1조(의견청취 등) 평가위원회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2조(결과의 공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 및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결과의 공개) 위원장은 연구용역이 ----- 제 12조----- -----.
제18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와 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외부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	제13조(수당 등) 평가위원회 회의에 ----- ----- -----	제14조(수당 등)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p>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 -----.</p>	
<p><u>제19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u></p> <p><u>② 의회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u>제14조(준용) ① 이 조례에 따른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u></p> <p><삭 제></p>	<p><u>제15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u></p> <p><u>② 의회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u></p>
<p><신 설></p>	<p><u>제15조(표창) 의장은 연구활동 성과가 우수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u></p>	<p><u>제16조(표창) (개정안과 같음)</u></p>
<p><u>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u></p>	<p><삭 제></p>	<p><u>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u></p>
<p>[별지 제1호 서식]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p>	<p>[별지 서식]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삭 제></p>	<p><삭 제>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시행하는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정책 연구용역”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리”란 연구용역 과제공모에서부터 연구용역의 완수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입법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들의 입법연구와 정책개발 등의 의정활동이 자유롭고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보장해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의장은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입법 및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4조(연구용역 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

도 연구용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② 위원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즉시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③ 위원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해당연도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예산지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의원은 연구용역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② 의회사무처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할 수 없는 의회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연구용역 과제선정기준) 연구용역의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 2.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 3.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제8조(연구용역 과제선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과제는 소관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상임위원회위원장이 선정한다.

-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안된 과제는 의회사무처장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선정한다.

제9조(연구기관의 공모) 총괄부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을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공모한다. 다만, 2회 연속 유찰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 ① 제9조에 따른 유효한 공모에 한정하여 연구용역과제별 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연구기관을 선정한다.

- 1. 참여연구진의 역량 및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

2. 과업지시서와 연구계획서의 부합성
 3.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
 4.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5. 연구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6. 연구 결과의 활용가능성
 7. 그 밖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평가위원회 위원은 연구용역 과제 관련 공무원,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한다.
- ④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한다.

제11조(연구용역의 관리) ① 총괄부서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관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관리는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2조(연구용역평가) ① 위원장은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에 대한 평가를 한다.

② 연구용역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결과의 공개) 위원장은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 및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외부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의회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6조(표창) 의장은 연구활동 성과가 우수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연구용역과제의 심의·선정 및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활용관리”를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 등”으로 한다.